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6. 4. 17.(금) 〕
〔 제337회 임시회 〕

심사결과보고서



완도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번호 제3575호】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1. 박병수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4. 1.
-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부당행위 근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부당행위 피해 신고, 처리,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신고자 비밀보장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 보복행위 신고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3조)
- 부당행위자 징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 발생 시 당사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부당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원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부당행위”란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 라. 타인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바.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져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 가. 신고·조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부당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부당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부당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 라. 그 밖에 부당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부당행위자”란 부당행위를 행한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부당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란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을 말한다.
7. “사건 관계인”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부당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 수립 및 시행) 의장은 부당행위 예방·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당행위 근절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당행위 피해 신고 등) 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부당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이하 “부당행위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비전자 문서와 함께 부당행위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부당행위자와 부당행위 내용
3. 부당행위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팀을 지정(이하 “전담팀”이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
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부당행위 신고의 처리와 분석
3.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

② 부당행위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은 부당행위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사실관계 조사) ① 부당행위 신고를 받은 전담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 피해자 등은 부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지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 등과 부당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휴가·재택 근무·교육 훈련·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유급휴가 명령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② 부당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외부전문가 등 의회 소속이 아닌 사람

인 경우에는 계약·위촉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해촉,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이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신분보장, 비밀 유지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의장은 부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

한 조치

2. 파견 공무원: 원소속기관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

3.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

② 의장은 부당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관리자가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징계요구 또는 윤리심사 절차 진행 시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 의장은 부당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부당행위 예방교육)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당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76호】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1. 박병수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4. 1.
-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소송비용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노동자
 -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기관방문 또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직무수행”이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수임료(수사 출석 비용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의장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정당한 직무수행 중 폭행, 폭언 등의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은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파견·전출·퇴직한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 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를 대리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

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건
2. 음주운전 등 개인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건
3.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사건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2.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2명 이내)
2. 완도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법률 분야 전문가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소송 결과 보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행정·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의 경과, 귀책 정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 사람이 환수 금액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1항 관련)

1. 행정·민사소송

가. 착수금

| 구분 | 지급 기준 | | 구비서류 |
|---------------------|--------------------------|--------------|------------------|
| | 사 건 별 | 착 수 금 | |
| 행정 · 민사 소송 | 가. 신청사건(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 ○ 300만원 이내 | - 신청서 - 소가증명원 |
| | 나. 본안 사건 | ○ 1,000만원 이내 | |
| | 다. 상소심 및 환송심 | ○ 1,000만원 이내 | |
| 기타 | - 가집행정지신청 | ○ 300만원 이내 | - 신청서 |
| |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 1,000만원 이내 | |

나. 승소사례금

|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 구비서류 |
|--|---|
| <p>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일부승소(100분의 50 이상)로 확정된 경우에만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p> <p>- 최종심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에 대한 지급은 하지 않는다.(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p> <p>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않는다.</p> <p>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p> | <p>- 신청서</p> <p>- 확정증명원</p> <p>-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접수증</p> |

다. 그 밖의 비용

| 지급 기준 | 구비서류 |
|--|--|
| 가. 인지대 : 실비 나. 송달료 : 실비 다. 검증비 : 실비 라. 감정비 : 실비 마. 출장여비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름 바. 그 밖의 실비 |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가. 착수금

| 지급 기준 | 구비서류 |
|---|--|
|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신청서 -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고소장, 공소장, 수사개시통보서, 판결문 등) |

나. 그 밖의 비용

| 지급 기준 | 구비서류 |
|--|-----------------------|
| 가. 출장여비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름 나. 그 밖의 실비 | - 신청서 - 영수증 등 해당서류 |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4조제1항 관련)

1. 행정·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1)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 등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확 약 서(제5조제1항 관련)

소 속: 완도군의회

직위(직급):

성 명:

본인은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완도군의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이후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일체를 즉시 완도군의회에 반납하겠습니다.
2. 동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완도군의회에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 소송 결과 보고서(제12조 관련) | | | |
|--------------------|-------------------------------|--------|-------|
| 사 건 명 | | | |
| 사건번호 | | | |
| 당 사 자 | 원 고 | | 소송수행자 |
| | 피 고 | | 소송수행자 |
| 판결결과 | | | |
| 판결일자 | | 소송물 가액 | |
| 판결이유 | | | |
| 향후계획 | | | |
| 첨 부 |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 | |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 출 일 | 제 출 자 | 회 부 일 | 상 정 일 | 심사결과 |
|--------|--------------|---------|--------------|--------------|------|
| 제3577호 | 2026. 3. 25. | 지 민 의 원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78호 | 2026. 3. 25. | 박재선 의 원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79호 | 2026. 4. 1.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0호 | 2026. 3. 20.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1호 | 2026. 3. 17.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2호 | 2026. 4. 1.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3호 | 2026. 3. 16.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4호 | 2026. 3. 19.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5호 | 2026. 3. 16.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6호 | 2026. 3. 16.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7호 | 2026. 3. 18.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8호 | 2026. 3. 10.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89호 | 2026. 3. 10.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90호 | 2026. 3. 10.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원안가결 |
| 제3591호 | 2026. 4. 1. | 완 도 군 수 | 2026. 4. 13. | 2026. 4. 13. | 수정가결 |
| | 이 | 하 | 빈 | 칸 | |
| | | | | | |

【의안번호 제357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25. 지 민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6. 4. 13.
-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면제 및 감면(안 제11조제2항제1호)
-별표4 수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봉안담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시 사용료등은 감면하지 않는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p> <p>2. (생 략)</p> <p>③ (생 략)</p> | <p>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p> <p>1. ----- <u>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붙임1

현행안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면제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감면 신청서 </div> </div> | | | | 처리기간 |
| | | | | 즉시 |
| 사망자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 주소 | | | |
| | 사망자 | 사망장소 사망원인 | | |
| 신청자 | 성명 | | | 성별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사망자와 관계 | | |
| 사용시설명 | 봉안담() | | | |
| 감면사유 (해당번호 ○표)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1. 무연고 행려 사망자() 2. 국민기초의료급여수급자() 3. 장기기증자() 4.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
| 감면받고자 하는 요금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 | 원 | | | |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 | | | |
| 완도군수 귀하 | | | | |
| ※ 구비서류 : 감면 입증서류 | | | | |

붙임2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감면 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사망자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소 | | 사망장소 | | |
| | 사망자 | | 사망원인 | | |
|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사망자와 관계 | | |
| 사용시설명 | 봉안담() | | | | |
| 감면사유 (해당번호 ○표)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1. 무연고 행려 사망자() 2.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의료급여수급자() 4. 장기기증자() 5.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 |
| 감면받고자 하는 요금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
| | 원 | | | | |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 | | | | |
| 완도군수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감면 입증서류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의안번호 제3578호】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25. 박재선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6. 4. 13.
-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활동(안 제5조)
- 지원 등(안 제6조)
- 지원 절차(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여성의 일상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일상지킴이"란 완도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순찰, 상담, 홍보, 캠페인 등 여성일상지킴이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된 활동 근거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동) 여성일상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야간 취약지역 순찰 및 위험 요소 점검
2.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여성 발굴 및 관계 기관 연계
4.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안전 활동
5. 군수 또는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 안전 관련 봉사활동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중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3. 그 밖에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단체
- ②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 ③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여성일상지킴이의 활동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79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1.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완도군의 소송사건과 직무 관련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총칙(안 제1조~제5조)<신설>
- 소송의 수행(안 제6조~제16조)<신설>
-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7조~제 22조)<신설>
- 직무관련 사건의 지원(안 제23조~제 28조)<신설 및 개정>
- 고문변호사의 위촉(안 제29조~제36조)<개정>
- 보칙(안 제37조)<신설>
- 소송비용 지급 기준 (안 별표)<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 기준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소송 수행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는 민사·형사사건을 말하며, 퇴직 이후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군 소속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완도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 변론 지원 및 그 밖에 소송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변호인”이란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등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를 말한다.
8.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의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고문변호사”란 군의 법률문제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위촉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총괄 및 주관) ①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사건을 주관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답변자료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거나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

니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 관련 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의 접수, 이송,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반소, 상소, 화해, 조정 및 그 밖에 소송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수행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방침의 수립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의 원칙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사건은 소송수행자에 의한 자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법률적 쟁점,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3. 소송가액이 크거나 소송가액에 비해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4. 패소할 경우 군정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절차 및 소송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① 군수는 자체수행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및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변경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 및 보고) ①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판결문, 결정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서가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 결과를 검토하여 상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판결 확정 후의 집행, 비용 회수 및 그 밖의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소 등의 결정) ① 군수는 제소, 반소 및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반소 또는 상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소, 반소 또는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제소) 군수는 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반소) 군수는 군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와 관련된 군의 권리를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상소) 군수는 판결, 결정 또는 그 밖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다. 다만,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상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소송 고지) 군수는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3자적 사건의 처리) ① 군수는 군에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재정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크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이라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대응할 수 있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승소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2.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밖에 판결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구상권 행사) ① 군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군이 금전채무를 이행

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임의 변제) ① 군수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군이 금전채무를 부담함이 명백하고, 임의 변제가 군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군이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군의 부담으로 정한 소송비용 외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보다 많거나 그 밖에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소송 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또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감사, 조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직무 관련 사건의 지원

제23조(지원 대상) 군수는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요건 및 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이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건일 것
2. 수사기관의 입건,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개시, 출석요구, 기소 또는 소송 제기 등 객관적인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3. 해당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정황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4. 공무수행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25조(지원 범위) ① 소송비용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비용
2.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한도액은 별표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사건 결과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산한다.

제2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제2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28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4조에 따른 지원 요건 해당 여부
2. 제25조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금액
3. 제27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제29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군수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된 개업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완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임기만료 후에도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청렴성 및 이해충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 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위촉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업무정지 중인 경우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해

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3.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 중요 서류의 법률적 검토
5.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제33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 내용의 난이도, 중요도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보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자문 요청 등)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 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자문 요청 사항이 고문변호사의 자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문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 요청을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의 자문회신은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 및 소송대리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회의) ① 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송비용 등 지급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구분 소송별 | 지 내 용 | 급 착 수 금 | 기 사 례 금 |
|--------------|---|--|--|
| 민사소송 행정소송 | 1.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30 | 없 음 |
| |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 3,000만 원 이하 ○ 3,000만원초과 5,000만원미만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그 밖에 군 행정·재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300만 원 이내 4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600만 원 이내 700만 원 이내 900만 원 이내 사건의 중요난이도 등을 고려 하여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5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금액 ·화해 취하 등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사례금 없음 |
| 형사사건 | 1. 단독 사건 | 150만 원 이내 |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된 때에는 착수금의 100% |
| | 2.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 (동일 사실관계로 2명 이상의 공무원등이 관련된 사건) | 300만 원 이내 | |
| 행정심판 | | 150만 원 이내 | ·해당 없음 |
| 기 타 | 1. 인지대 | 실 비 | |
| | 2. 송달료 | 실 비 | |
| | 3. 검증비 | 실 비 | |
| | 4. 기타비용 | 실 비 | |

- 주) 1. 신청사건은 가처분가압류집행정지 등 본안판결 전에 임시적·보전적 처분을 구하는 사건을
말함
2.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3.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의 확장 등으로 소가가 증액된 경우 변경된 소가를 기준으로 착
수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민사·행정소송의 환송심의 경우에는 해당 본안사건 착수금 기준액의 100분의 50 이내
에서 지급할 수 있음

【의안번호 제3580호】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2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어울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목적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시설의 구성 및 사업내용(안 제3조~제4조)
- 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이용등에 대한 내용(안 제5조~제10조)
- 이용 신청서,이용승인 통지서,취소신청서,이용료 등 (별지 제1호~3호, 별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881-3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구성)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헬스장(체력단련실) 및 신체활동실
2. 공유주방 및 개방형 라운지(카페)
3. 아동돌봄 공간
4.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기타 부대시설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2. 주민 건강증진 사업
3.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한 공간 대관 및 라운지 운영
5. 그 밖에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센터의 관리 주체는 군수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카페 등 부대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 준수사항 및 허가취소 사유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 돌봄지도사, 시설 관리원 등의 인력을 배치한다.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시설은 그 운영시간을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월요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이용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 등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 내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 이용의 취소) ①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취소한 자가 이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의 절반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강좌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수강에 필요한 비용
2. 자격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행정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

| | | | |
|--|---|------------------|--|
| 시설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 ~ : (시간) | | |
| 신청인 성명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 단체명(해당 시) | | | |
| 이용 목적 | <input type="checkbox"/> 체육 활동 <input type="checkbox"/> 요리·식생활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창작·공예 활동 <input type="checkbox"/> 회의·강의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희망 이용시설 |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실 <input type="checkbox"/> 공유주방 <input type="checkbox"/> 헬스장 <input type="checkbox"/> 신체활동실 | | |
| 이용 인원 | | | |
| - 시설이용료 | | | |
|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
| | 기 준 금 액(원) | | |
| 프로그램실 | 1회 (3시간 이하) 1회 (6시간 이하) | 20,000 30,000 | - 이용 3일전 취소 : 전액 반환 - 이용 1일전 취소 : 50% 반환 -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 (이용일의 절반이 경과 한 경우에는 반환 하지 않음) |
| 공유주방 | " | 20,000 30,000 | |
| 신체활동실 | " | 10,000 15,000 | |
| 헬스장 | 월 회비 | 20,000 | |
| | 연회비(12개월) | 150,000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에서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이용 목적: 시설 이용자 확인 및 관리 - 보유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시설 이용승인 통지서

| | | |
|---|---|---|
| 승인번호 |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제20 - 호 | |
| 이용시설 |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실 <input type="checkbox"/> 공유주방 <input type="checkbox"/> 헬스장 <input type="checkbox"/> 신체활동실 | |
| 승인내역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 ~ : (시간) |
| | 사용 용도 | <input type="checkbox"/> 체육 활동 <input type="checkbox"/> 요리·식생활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창작·공예 활동 <input type="checkbox"/> 회의·강의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사용 료 | 금 원 |
| | 납부 방법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농협/000-00-000000/완도군세외수입징수관) |
| | 승인 조건 |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 조 준수 |
| <p>「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이용승인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완 도 군 수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별표]

완도군 다어올림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 시설이용료

| 구 분 | 이 용 료 | | 비 고 |
|--------------------|----------------------------|-------------------|--|
| | 기 준 | 금 액(원) | |
| 프로그램실 (141.24㎡) | 1회 (3시간 이하) 1회 (6시간 이하) | 20,000 30,000 | - 이용 3일전 취소 : 전액 반환 |
| 공유주방 (83.31㎡) | " | 20,000 30,000 | - 이용 1일전 취소 : 50% 반환 |
| 신체활동실 (90.00㎡) | " | 10,000 15,000 | -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 (이용일의 절반이 경과 |
| 헬스장 (113.91㎡) | 월회비 연회비(12개월) | 20,000 150,000 | 한 경우에는 반환 하지 않음) |

【의안번호 제3581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등에 따른 입장료 감경 필요성에 따라 완도타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 제목 변경(입장료 면제→입장료의 감면)
- 제5조제1항 입장료의 감면 대상 정비
 - 제1호(면제) 입장료 면제 대상 정비(현행 제1호~제20호와 동일)
 - 제2호(100분의50 감경) 입장료 감경 대상 신설
- 제5조제2항 입장료 감면 대상 확인 절차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타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입장료 면제)”를“(입장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제

- 가. 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다.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라.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 마.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사.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아. 현충일에 입장하는 국가보훈 가족
- 자. 국가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차. 장애인
- 카. 65세 이상 노인

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경

가. 완도군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입장료 면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u>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u></p> | <p>제5조(입장료의 감면) ① <u>군수는 다음 ----- 감면할 수 있다..</u></p> <p><u>1. 면제</u></p> <p><u>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u></p> <p><u>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u></p> <p><u>다.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u></p> <p><u>라.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u></p> <p><u>마.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u></p> <p><u>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u></p> <p><u>사.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u></p> <p><u>아. 현충일에 입장하는 국가보훈 가족</u></p> <p><u>자. 국가의료기관에서 요양</u></p> |

중에 있는 상이군경

차. 장애인

카.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

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
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

족

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경

가. 완도군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8. 현충일에 입장하는 국가보훈 가족

9. 국가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10. 장애인

11.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 | |
|---|-------|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 <삭 제>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
게 제시해야 한다.

【의안번호 제3582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1.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기간 확대(안 제8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변경사항 반영
- 상위법과 중복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범위 명확화 및 시각장애 정도에 관한 규정 중 미흡한 부분 보완(안 제2조제1항)

- 상위법과 중복 부분 생략으로 알기쉽게 하고 장애정도 명확화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대체취득 관련 조항중 1년이상 경과 후 말소·이전 등록 시 면제하는 규정 삭제 및 소유여부 판단 기준관련 상위 법령 조항 수정(안 제2조 제3항,제5항)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군세 감면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안 제2조제1항)
 -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안 제4조제1항)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안 제5조제1항)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안 제9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3조)
 -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 규정 삭제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대상 규정 관련 법령 명칭 및 조항 수정(안 제5조제1항제3호)
 -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명칭 및 인용조항을 현행화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감면제도의 알물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2017년 12월 31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제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조 내의 “감면율”은”을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로, “한다”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p> |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p> |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

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

-----.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8년 12월 31일까지 -----

----- 2028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2028년
12월 31일-----

【의안번호 제3583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6조제6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할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84호】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9.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등록 전입 지원 확대로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입자 지원금 상향 조정(안 제4조 제1항)
 - 현행 5만원 → 변경 1회 한정 10만원
- 전입신고 지원 신청 작성 기한 삭제(안 제5조 제1항)
 - 현행 1년 이내 신청 → 변경 1년 이내 삭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전입자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만원을”을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전입자 1명당 완도사랑 상품권 <u>5만원을</u>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신청 절차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u>1년 이내</u>에 <u>별지 제1호서식</u>의 전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 ⑤ (생 략)</p> | <p>제4조(지원) ① ----- ----- ----- <u>10만원을</u> <u>1회에 한하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신청 절차 등) ① ----- ----- ----- <u>별지 제</u> <u>1호서식</u>-----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의안번호 제358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필수 최소정보(생년월일)만 수집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 등 별지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는 생년월일 등 최소정보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여 살필요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 | | | | | | |
|--|---|-----|------------|--|--------|----------|--|
| 신 청 인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
| 서비스 이 용 대상자 |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유형(담당자확인) | | | |
| | | | | 시간제 / 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시간제 / 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시간제 / 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 | | |
| 연 락 처 | 자택 | | | | 휴대전화 | | |
| 입금계좌 | 은행명 : | | 예금주(신청인) : | | 계좌번호 : | | |
| 양육공백 유 형 |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 | |
| <p>○ 신청인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여야 함</p> <p>○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p> | | | | | | | |
| <p>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p> | | | | | | | |
| <p>신 청 인 :</p> | | | | <p>(서명 또는 인)</p> | | | |
| <p>년</p> | | | | <p>월</p> | | <p>일</p> | |
| <p>완 도 군 수 귀 하</p> | | | | | | | |
| <p>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p>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서비스 이 용 대상자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비스 유형(담당자확인) |
| | | | | 시간제 / 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
| | | | | 시간제 / 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
| | | | | 시간제 / 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
| 연 락 처 | 자택 | | 휴대전화 | |
| 입금계좌 | 은행명 : | | 예금주(신청인) : | 계좌번호 : |
| 양육공백 유 형 |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 <p>○ 신청인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여야 함</p> <p>○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p> | | | | |
| <p>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p> | | | | |
| <p>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년 월 일</p> | | | | |
| <p>완 도 군 수 귀 하</p> | | | | |
| <p>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p> | | | | |

【의안번호 제3586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각 협의체별 구성 및 운영규정 보완 및 위원의 제척, 해촉 등 규정 반영

나.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약칭)에 따른 법정용어 사용
- (당초)대표협의체→(변경) 군 협의체
- 각 협의체별 구성 및 운영규정 보완: 안 제5조~제9조,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보완: 안제13조의2,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군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읍·면 단위”를 “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대표협의체”를 “군 협의체”로, “읍·면단위”를 “읍·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표협의체 구성)”을 “(군 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협의체”를 “군 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대표협의체”를 각각 “군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건의료원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를 “다만, 법 제4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제6조제5호 중 “대표협의체”를 “군 협의체”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 제목“(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읍·면 단위”를“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읍·면 단위”를“읍·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이장·반장 및”을“이장·주민자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읍·면 단위”를 각각“읍·면”으로 하고, 같은 항 중“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이상”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군 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질병·품위손상·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을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중 “대표협의체”를 “군 협의체”로 한다.

제19조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를 “군 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군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군 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복지위원”이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연계·지원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p> <p><신설></p> <p>제3조(기능) ① <u>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생략)</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p> <p>제3조(기능) ① <u>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군 협의체”라 한다)</u>----- -----.</p> <p>1. ~ 4. (현행과 같음)</p> |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7. (생략)

② 대표협의체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회보
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
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
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
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
가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5. 읍·면 -----

-

6.·7.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협의체 기구) 군 협의체---

----- 읍·면

제5조(군 협의체 구성) ① 군 협의
체-----

----- . 다만,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 협의체-----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1. ~ 3. (생략)
-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

- ③ 군 협의체-----

----- 건강증진과장-----
----- . 다만, 법 제41조제3항에 -----

- 1. ~ 3. (현행과 같음)
-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대표자

5.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8조(실무분과) ① (생략)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 군 협의체 -----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

위원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제9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 읍·면 지역의 위기 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

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 -----

----- 읍·면 -----
-----.

② 읍·면 -----

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4. (생략)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행정리의 이장·반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7. (생략)

④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위원) ① 군수는 읍·면 단위로 읍·면의 사회복지

-----.

1. ~ 4. (현행과 같음)

③ 읍·면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이장·주민자치위원

7. (현행과 같음)

④ 읍·면 -----

-----.

⑤ 읍·면 -----

----- 이상-----
-----.

<삭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

② (생략)

<신설>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
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
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
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
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질병·품위손상·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신 설>

<신 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
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
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
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
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받
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
니한 경우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
군 협의체-----

-----.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군 협
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
기 -----

-----.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군 협
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
우에는 군 협의체와 사전에 협
의한 후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3587호】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제1항제1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방문진료·간호”를 “방문진료·간호·약물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위탁할 수 있다.</p> <p>1. 재가 생활에 필요한 <u>방문진료·간호</u>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p> <p>2. ~ 9. (생략)</p> <p>② (생략)</p> | <p>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 ----- ----- -----.</p> <p>1. ----- <u>방문진료·간호·약물관리</u> -----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의안번호 제3588호】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요건을 확대 및 명확히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사업의 지원대상·신청요건 확대 및 명확화(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89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0.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4. 13.
-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 및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정비(제3조, 제4조)
-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를 상위법령 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 운영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해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권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한 내에 완도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 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정부 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 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p> |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 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임산부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해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한다.</p> |
| <p>제4조(지원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보건의 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이력 포함) 3. 출산 증명서류 (산모수첩, 출 생증명서 등) | <p>제4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권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 한 내에 완도군 보건의료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

【의안번호 제3590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원대상과 신청요건을 확대 및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 향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실거주 요건 명문화(안 제5조)
- 거주기간 미달자의 신청 기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
- 자녀 순위 결정 기준 정립(안 제5조의4)
- 법률혼 자문화가정으로 범위 확대 및 지원 기준 명확화
(안 제7조~제8조 및 안 제 11조)
- 별지 서식: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원 기준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둔”을 “두고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를 “거주기간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4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전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순위 산정을 위한 형제·자매로 인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계속하여”를 “계속하여 거주하며”로, “군 보건기관에 등
록된 임신부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고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확인일로”를 “12주 경과후”로,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의료기
관에서 발급된 임신확인서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한다.

제11조제2항 중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 되어야 한다.</p> <p>1. 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p> <p>2.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④ 군에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u>1년 이 경과한 날 이후</u> 지원대상이 된다. <후단 신설></p> <p>⑤ (생 략)</p> <p>제5조의4(출산장려금 자녀순위 결정) ① (생 략)</p> <p>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자녀순위 결정에도 제1항과 같다. 단, <u>이전자녀는 부 또는 모가 양육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u></p> | <p>제5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① ----- ----- -----.</p> <p>1. ----- --- <u>두고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거주기간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에</u> ----- -. <u>이 경우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4(출산장려금 자녀순위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단, <u>이전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친자</u></p> |

하여야 형제·자매로 인정한다.

제7조(출산 전 준비금 지원) ①
(생략)

②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④ 지원신청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순위 산정을 위한 형제·자매로 인정한다.

제7조(출산 전 준비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계속하여 거주하며 -----
-----한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두고,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12주 경과 후
----- 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확인서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8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신청서

| | | | | |
|--|--------------------|-------------------------------------|---------------|---------|
| 보호자 | 부성명 | | 생년월일 | |
| | 모성명 | | 생년월일 | |
| 지원 대상아 | 성명 | | 생년월일 | |
| | 자녀순위 (둘째아 이상가능) | [] 둘째 [] 셋째 [] 넷째 [] 기타 (재) | | |
| 주소 | | | 핸드폰 | |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첨부서류 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이전자녀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 | | |
|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 | | | |
| 완도군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완도군 해당 사업과 및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등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파일(DB)수집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완도군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 완도군 출산장려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활용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및 부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입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사업과,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시 : 3년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및 가족관계확인서 열람(세대원 수 확인, 출생 여부 확인 등) • 신생아양육지원 사업이 출산장려사업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 | | |
| 신청서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조회·확인·출력하는 것에 동의하며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대상자 의 부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 | | 대상자 의 모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완도군수 귀하 | | | | |

| 증명원 대조 확인 처리인 | | | | | | |
|---|---------------|---|----|--|----|------|
| 완도군 내 거주기간 확 인 | 부 또는 모 | 년 월 일 ~ 현재 | | | | |
| | 신청자녀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현재 | | | | |
| | 이전자녀 (첫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둘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셋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넷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다섯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p>※ 아래 3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p> <p>① 신청자녀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1년 이상 거주</p> <p>② 이전자녀 모두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완도군 내 1년 이상 거주</p> <p>③ 부 또는 모 완도군 신청일 기준으로 완도군 내 1년 이상 거주</p> | | | | | | |
| 담당공무원 확인 | 소속 | | 직급 | | 성명 | (서명) |

※ 돌맞이 축하금은 돌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증명원 대조 확인 처리인 | | | | | | |
|---|---------------|---|----|--|----|------|
| 완도군 내 거주기간 확 인 | 부 또는 모 | 년 월 일 ~ 현재 | | | | |
| | 신청자녀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현재 | | | | |
| | 이전자녀 (첫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둘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셋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넷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이전자녀 (다섯째) |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p>※ 아래 3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p> <p>① 신청자녀 완도군 내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1년 이상 거주</p> <p>② 이전자녀 모두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완도군 내 1년 이상 거주</p> <p>③ 부 또는 모 완도군 신청일 기준으로 완도군 내 1년 이상 거주</p> | | | | | | |
| 담당공무원 확인 | 소속 | | 직급 | | 성명 | (서명) |

※ 돌맞이 축하금은 돌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출산 전 준비금 지원 신청서

| | | | | | |
|--------|--|------|-----|-------------------------|--------------------|
| 신청인 성명 | | 생년월일 | | 임산부등록 (신청 시 PHIS 확인) | 등 록 () 미등록 () |
| 임신헌인일 | | | 태아수 | | |
| 출산예정일 | | |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에 √ 표시 하주세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완도군 해당 사업과 및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 완도군 출산장려사업 등
- 개인정보 파일(DB)수집의 목적
 -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완도군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및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완도군 사업 과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 3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및 가족관계등록부 열람·확인·출력
 - 출산장려사업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신청서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조회·확인·출력하는 것에 동의하며 완도군 출산 전 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신청기간>

- 임신 확인일 이후 12주가 되는 날~ 출산 전

<첨부서류>

- 임신부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당일 발급분)
-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단, 완도군 내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가 군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음)
-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일 기준 2주 이내).
- 삭제

[별지 제7호서식]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신청서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연락처 | |
| 항체검사일 | | 예방접종일 | |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풍진 항체가 없는 (검사결과 10IU/ml 미만) 가임기여성(15~49세)
 ※ 지원금액: 1인 1회,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풍진 예방접종일로부터 6개월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완도군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에 √표시 해주세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완도군 해당 사업과 및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 완도군 출산장려사업 등
- 개인정보 파일(DB)수집의 목적
 - 완도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완도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
-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완도군 사업 과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 3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및 가족관계등록부 열람·확인·출력
 - 출산장려사업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 | |
|------|--|
| 제출서류 | 풍진 항체 검사결과지 1부. 증빙자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

[별지 제7호 서식]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신청서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 항체검사일 | | 예방접종일 | |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p>※ 삭제</p> <p>※ 지원금액: 1인 1회, 최대 5만원 지원</p> <p>※ 신청기간: 풍진 예방접종일로부터 6개월까지</p> | | | |
| <p>〈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p> | | | |
| <p>완도군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p> <p>(※ <input type="checkbox"/> 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해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완도군 해당 사업과 및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 완도군 출산장려사업 등</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파일(DB)수집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완도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활용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p> <p><input type="checkbox"/>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사업 과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3년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조회 및 가족관계등록부 열람·확인·출력 • 출산장려사업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 | |
| <p>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 | | |
| <p>년 월 일</p> | | | |
| <p>동의인(신청인)</p> | | | <p>(서명)</p> |
| <h3>완도군수 귀하</h3> | | | |
| 제출서류 | <p>풍진 항체 검사결과지 1부. 증빙자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p> | | |

○ 처분

(단위 : 필지·동, m², 백만원)

| 구분 | 당 초 | | | 변 경 후 | | | 증감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합계 | 12 | 0 | 100 | 18 | 6,847 | 1,956 | 6 | 6,847 | 1,856 |
| 토지 | 12 | - | 100 | 18 | 6,847 | 1,956 | 6 | 6,847 | 1,856 |
| 건물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3. 세부내역

| 안건 번호 | 제출부서 | 안 건 명 | 비 고 |
|-------|------------------|---|-----|
| 계 | | 18건 (토지취득 3건, 건물취득 9건, 토지처분 6건) | |
| 제1호 | 세무회계과 |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45-1(기부채납) ▶ 토지취득 - 1필지(1,944m ²), 9.6백만원 | |
| 제2호 | 관 광 실 |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3,416m ²), 510백만원 | |
| 제3호 | 해 양 치 유 담 당 관 | 완도군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신축 ▶ 건물신축 - 2동(3,868m ²), 25,000백만원 | |
| 제4호 | 해 양 치 유 담 당 관 |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건립 ▶ 건물신축 - 3동(2,603m ²), 10,800백만원 | |
| 제5호 | 해 양 치 유 담 당 관 | 완도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 건물신축 - 4동(5,666m ²), 20,000백만원 | |
| 제6호 | 문화예술과 | 장보고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6,313m ²), 301백만원 | 부결 |
| 제7호 | 가족행복과 |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번지 외 5필지 ▶ 토지처분 - 6필지(6,847m ²), (탁상감정1,856백만원) |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592호】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25. 박성규 의원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완도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셔틀버스 운영 등(안 제3조)
- 운행 노선 지정 등(안 제4조)
- 목적 외 운행 금지(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완도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행사”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 해조류박람회, 체육대회, 공청회·설명회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후원하는 박람회 및 축제·행사를 말한다.
3. “문화시설 등”이란 군과 읍면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문화유산·관광·체육, 교육, 보건·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임시주차장”이란 군이 지역행사 등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부지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2호부터 제4호의 지역행사, 문화시설 등 및 임시주차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완도군민과 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 노선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의 성격,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93호】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9.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와 더불어 개발이익 공유를 명시하여 조례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참여 수익 배분 시 발전소 인접마을 우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명 변경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발전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 협의회의 구성(안 제7조)
- 주민참여 방법 등(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 및 초과이익 공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 확대 기준 및 지자체 출자·출연 근거 마련으로 지역 상생발전과 에너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 제5항은 조문 상 단위 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조례 내용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 조례안 제14조(초과이익 공유)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40MW 이상인 발전소 또는 주민참여 발전소”로 수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참여”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완도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발전사업 또는 발전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과 참여지역 주민의 우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 군수는 완도군 내에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초과이익 공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 발전소와 주민참여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상의 예상 연평균 발전량 대비 8% 초과 시 공공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초과 소득액의 10%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장학사업기금,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u></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군수는 <u>군민참여</u> 및 <u>개발이익 공유 활성화</u>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p> <p>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 설></u></p> <p>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p> | <p style="text-align: center;"><u>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u></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군민참여</u> ----- -----.</p> <p>④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완도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발전사업 또는 발전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 -----</p> |

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⑦ (생략)

제12조(주민참여 방법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과 참여지역 주민의 우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

군수는 완도군 내에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초과이익 공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 발전소와 주민참여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상의 예상 연평균 발전량 대비 8% 초과 시 공공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초과 소득액의 10%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장학사업기금,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제13조 (생략)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별표 1]

인접지역과 참여지역 주민 우대 가중치 산정표(제12조제4항 관련)

태양광 가중치 산정표

| 구분 | 해당지역 범위 | 가중치 | 비고 |
|----|----------------------------|-----|----|
| 1 | 발전소 반경 100m 이내 | 4 | |
| 2 | 발전소 반경 100m 초과 ~ 500m 이내 | 3 | |
| 3 | 발전소 반경 500m 초과 ~ 1,000m 이내 | 2 | |
| 4 | 발전소 반경 1,000m 초과 | 1 | |

육상풍력 가중치 산정표

| 구분 | 해당지역 범위 | 가중치 | 비고 |
|----|-----------------|-----|----|
| 1 |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 | 3 | |
| 2 | 각 발전기 반경 1km 초과 | 1 | |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표

| 구분 | 해당지역 범위 | 가중치 | 비고 |
|----|------------------|-----|----|
| 1 |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 3 | |
| 2 | 각 발전기 반경 10km 초과 | 1 | |

비고

1. 주민 1명당 수익기본액(x) : 총 수익지급액(REC)/{(해당지역 주민 수×적용가중치×x) + (해당지역 주민 수×적용가중치×x) +.....}
2.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기준표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섬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3. 위 기준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 및 주민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는 장학사업기금,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15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주
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에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정안 제15조와 같음)

【의안번호 제359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의제외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부터 보수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

나. 주요내용

-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기능 수행(제9조)
- 서면심의 근거 마련(제10조)
- 심의 제외대상 규정(제10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심의를 경관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제9조 제2항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심의기구를 「완도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효율성과 조문 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안과 같이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시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규율대상이 공공조형물인 점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의2(심의 제외대상) 제5호 규정은 적용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3제곱미터 이하 또는 마을 표지석인 경우”로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10조의2 제7호 규정은 심의 자문을 받은 공공조형물의 일부 변경에 따른 심의제외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변경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안과 같이 “사업규모”를 “사업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를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완도군 경관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심의제외대상)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4.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
5. 동상, 기념비 등의 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인 경우
6.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의 목적 등 일시적인 설치인 경우
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조형물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사업이 아닌 건축, 개발 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u></p> <p>2. <u>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u></p> <p>3. <u>공공조형물 등 설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u></p> <p>4. <u>공공조형물 등 보수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u></p> <p>② <u>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u>위원회</u></p> |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 -----</u> -----.</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u>위원회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완도군 경관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u>위원회</u></p> |

는 부군수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에 관해 학식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내부위원은 공공시설물 등 설치와 관련된 완도군 산하 실장·담당관·과장·소장·읍·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위촉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운영시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위원회의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팀장으로 한다.

<신 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삭 제>

제10조의2(심의 제외대상)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

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4.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

5. 동상, 기념비 등의 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인 경우

6.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의 목적 등 일시적인 설치인 경우

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조형물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사업이 아닌 건축, 개발 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u>위원회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완도군 경관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10조(위원회의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u>공공시설물</u>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p> <p>② (생략)</p> <p>제10조의2(심의제외대상)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동상, 기념비 등의 부지면적</p> |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원안과 같음)</p> <p>② <u>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 ----- 따른다.</u></p> <p>제10조(위원회의기능) ①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 <u>공공조형물</u>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의2(심의제외대상) ----- ----- ----- ----- -----.</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p> |

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
지석인 경우

6. (생략)

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조형
물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
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생략)

----- 이하 또는 -----

6. (개정안과 같음)

7. -----

----- 사업비-----

8. (개정안과 같음)

【의안번호 제3595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9.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6.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중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개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지 제6호]“출입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별지 제7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제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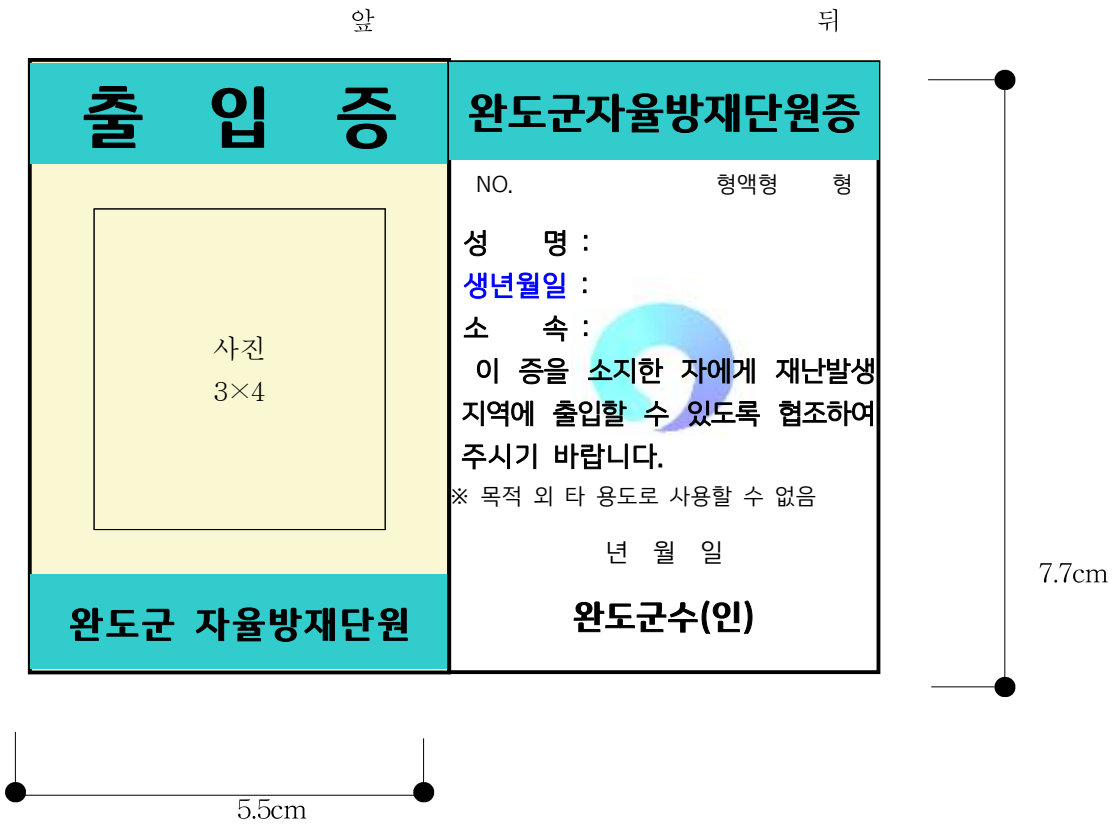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청구인 | | 전화번호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사고자와관계 | |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 |
| | 사고(사망)장소 | | |
| | 사고경위 |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
|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애보상 | |
|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
| | 청구금액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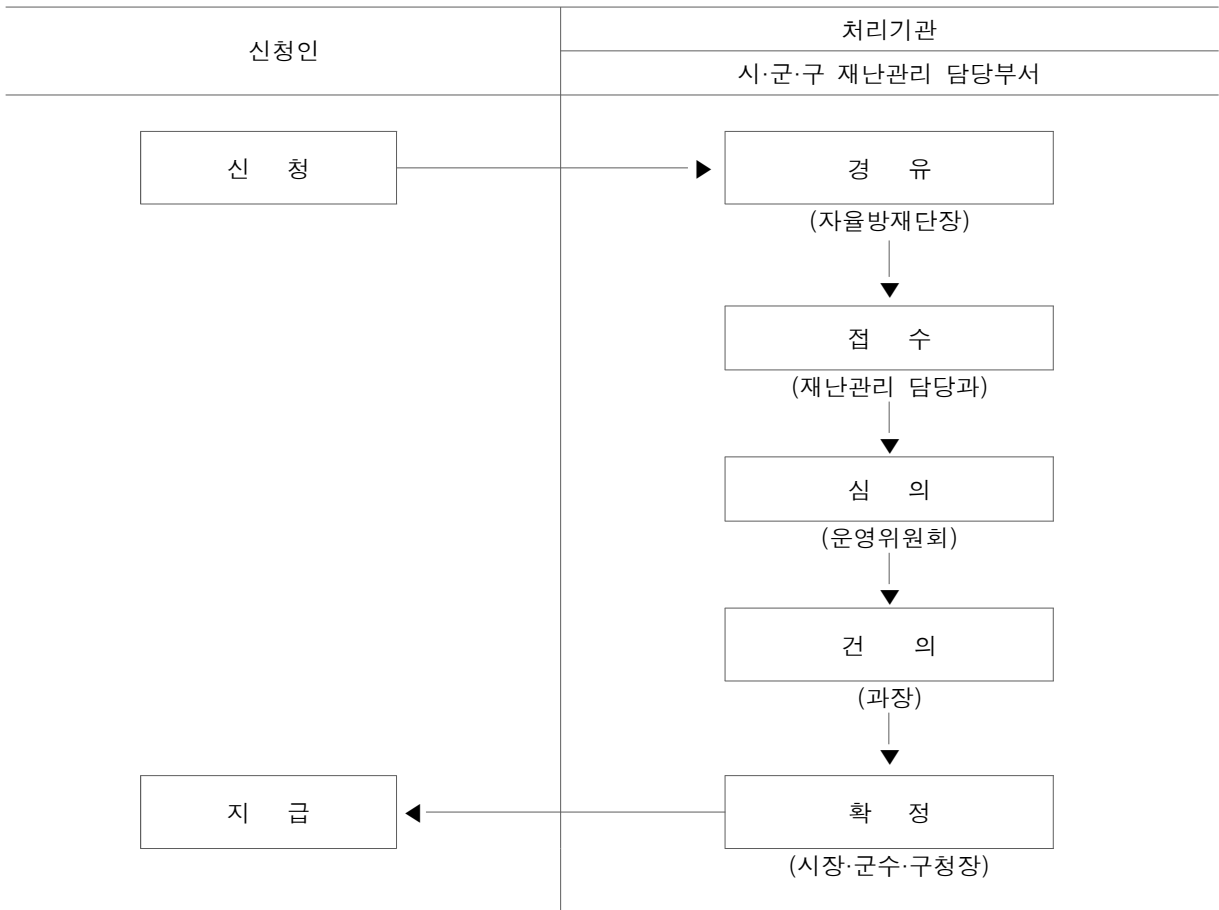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붙임 4

개정안

■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 | 주소 | |
| | 성명 | 생년월일 |
| 청구인 | | 전화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사고자와관계 |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
| | 사고(사망)장소 | |
|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 | 청구금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완도군 수귀하

【의안번호 제3597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협의의견 청취의 건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3.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4. 13.
다. 상정일자 : 2025. 4.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항, 화흥포항은 기상 악화 시 특정 구간을 통한 고파랑 내습으로 항내 정온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완도항의 경우 황천 시 중앙방파제와 주도 사이로 파랑이 내습하여 1부두 전면의 정온 미확보로 어선들이 인근 지역(신지 등)으로 상습 대피하며 화흥포항 역시 북서계열 고파랑으로 인해 차도선 접·이안 위험 및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물양장 확충과 파제제, 방파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항내 정온을 확보하고 완도항·화흥포항의 어항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어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 공익사업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업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항」 매립계획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가용리 북방파제 북측
- 내 용 : 항만시설(소형선부두, 대체부두 방파제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 신청현황 : 16,880㎡ (기존 12,680㎡, 신규 4,000㎡)

| 용도 | 매립면적(㎡) | | |
|------|---------|-------|-------------------------------|
| | 기존 | 신규 | 비고 |
| 계류시설 | 10,370 | - | 계류시설 |
| 외곽시설 | 2,310 | 4,000 | -대체부두 방파제 2,310 -파제제 4,000 |
| 합계 | 12,680 | 4,000 | 16,680 |

- 협의요청자 : 전라남도

○ 기대효과

- 항내 부족한 접안시설 및 방파제를 확충하고, 파제제 배치를 통해 전 방향 파랑에 대한 항내 정온 확보 및 어업기능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제고
- 어선의 접·이안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양육 및 휴식이 가능한 물양장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의도모하여 어항기능의 향상 기대

○ 「화흥포항」 매립계획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정도리 일원
- 내 용 : 화흥포항 항내 정온 개선 및 계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파제연장 및 공유수면 매립
- 신청현황 : 3,300㎡

| 용 도 | 사 업 명 | 매립면적 | 비 고 |
|------|----------|-------|-----|
| 계류시설 | 돌제 | 1,200 | 기존 |
| | 차도선부두 | 1,100 | " |
| 외곽시설 | 방파제(정도리) | 1,000 | " |
| 합 계 | | 3,300 | |

○ 협의요청자 : 해양수산부

○ 기대효과

- 화흥포항 방파제 연장 시설 확충을 통해 북서계열 고파랑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차도선 접·이안 위험성을 해소하고 선박 계류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의 승·하선 편의를 확보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찬성의견](#)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고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협의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